

시 민

문서번호	자활지원과-3890
결재일자	2019. 10. 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자활사업팀장	자활지원과장	복지기획관	복지정책실장
김세현	박용숙	김병기	代이해선	10/24 강병호
협 조	주민지원팀장 김현정			

I·SEOUL·U



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

2019. 10.

복지정책실

(자활지원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-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

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자활근로사업에 이바지한 자활근로 참여자, 자활사업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시장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.

I 근거

-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
-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(인사과-3798, 2019.2.1.)
- 2019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(자치행정과-2168, 2019.1.29.)

II 표창개요

- 훈 격: 서울특별시장
- 추천대상: 자활근로 참여자(지원자), 자활사업 종사자, 자활기업, 협력기업
- 추천인원: 10명(시민 및 자활기업,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명)

구 분	시민 및 자활사업 유관기관 등
계(10명)	10명
해당부서 · 기관	- 자활사업 참여시민 2명 - 자활기업 2개 - 자활사업 유관기관 종사자 4명 - 자활사업 협력기업 2개

- 수여시기: 2019. 12월 초(예정)

Ⅲ

세부 추진계획

□ 선발기준

- 표창 추천일 기준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(서울시 표창조례 제7호)하고, 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(* 단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)
- 자활사업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
- 위의 선발기준을 충족하면서 시장표창 결격사유가 없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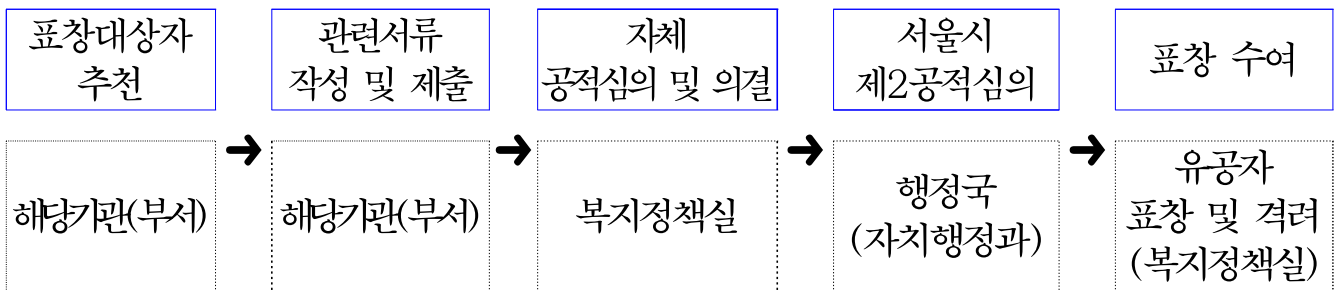
〈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(결격사유) 〉

-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 인 자(사회적 이슈,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)
-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(표창조례 제6조)
- 최근 2년 이내(추천일 기준)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※ 단, 제안제도·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
-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
-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(표창조례 제6조 1호)
-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, 순서대로,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
※ 단체·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
- 공적서 공개를 투명 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
-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(사실조사서 확인)
 -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-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, 1년 이하 징역·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
 -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
-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□ 제출서류

- 공적요약서
- 공적조서
-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
-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
- 관련 증빙서류

□ 선발절차



□ 공직선거법 검토

- 관련규정: 공직선거법 제112조
 - 검토결과: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.
 - '서울특별시 표창조례'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
- ※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·출연기관 직원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불가

□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

- 관련규정: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
- 검토결과: 수여 가능
 -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
 -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
 -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

IV

행정사항

□ 소요예산

○ 총 소요예산: 60천 원

- 표창장 제작(복지정책실): 60천 원

▶ 산출내역: 6,000원 × 10매 = 60천 원

▶ 예산과목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, 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),
기본경비(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), 기금관리비, 일반운영비,
사무관리비(201-01)

□ 향후 추진일정

- 대상자 추천 : '19. 10. 24. ~ 31.
※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
-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: '19. 11. 4. ~ 5.
-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(자치행정과) : '19. 11월(예정)
- 표창장 수령 : '19. 12월(예정)

끝.